

< 서식 >

의견제출서

사	업	명	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(남양주왕숙진건1·2 기업이전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)			
사	업	위	치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, 진건읍, 퇴계원읍 일원		
사	업	시	행	자	한국토지주택공사	
의	견	제	출	자	성명	연락처
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						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2월 2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